

2025년 청북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면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마.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사.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의 해제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